

심사보고서

-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사보고서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507호 |
|----------|-------|

2016. 12. 14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-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05일

-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함승덕 충북도립대학총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15년 부터 장학금 예산을 대학회계로 편성·운영 중으로,
- 대학회계와 장학기금 간 중복 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4장 장학기금 삭제(안 제20조부터 제26조 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본 조례안은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 「국립대학회계법」 ” 이라 함)의 제정(2015. 3. 13), 시행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경영하는 공립학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한 바,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던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행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규정된, 도립대 장학기금 조성 재원은 다음 3가지 임.
 1.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%내외
 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 3.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
- 도립대 장학기금이 고갈되어 기금 운용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기금의 주요 재원은,
 - 첫째,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·지원하는 국비 교외장학금(총 장학금의 65.6%)인데 이는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으로 구분되며, 제 I 유형은 대상선발을 ‘한국장학재단’에서 실시하고 있고, 제 II 유형은 도립대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있으며, 회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음.

- 둘째,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징수액의 10%(총 장학금의 8.4%)인데, 대학회계 재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「국립대학회계법」 제25조에 따라, 등록금 징수액은 기금으로의 전출이 불가능한 바, 사실상 대학회계를 통해 관리할 수밖에 없음.

※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

제3조(등록금의 면제·감액)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.

※ 「국립대학회계법」

제25조(회계 간 전입·전출)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·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·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- 그리고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, 다만, 자발적 기탁의 경우로 한정해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는 허용하고 있으며, 외부 장학기탁금은 향후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발전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.

※ 「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」

제4조(사업)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

제7조(기금의 조성)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3. 개인·기관·단체·기업체의 기부금품

- 또한,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보면,
기금 순수조성액은 181,811,500원으로, 이 중 157,599,957원은 이미 지출하였고, 현재 남은 24,211,543원도 올 연내 지출 예정으로,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음.
- 따라서, 기금 잔액 현황 및 제도적 변화 현실에 비추어 볼 때, 도립대 장학기금의 별도 유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.
- 이에 본 조례안은, 상위 규정 등 제도적 제한에 따라, 대학회계와 장학기금 간 중복 운영에 따른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대학회계와 통합 운영하고자 장학기금에 관한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본 조례안 개정 이후 “충북도립대학 장학 운영 규정” 등 하위 규정의 개정 추진 시, 장학금의 조성, 지급, 결산보고 등 도립대 장학금 운용에 있어 향후 장학금 운영계획<참고자료2>에 따라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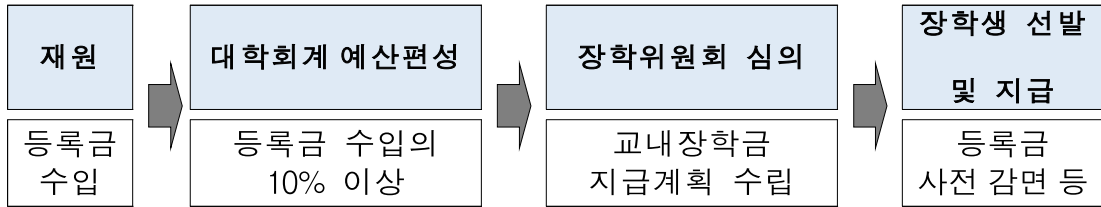
<참고자료1> 장학기금 조성 및 잔액 현황

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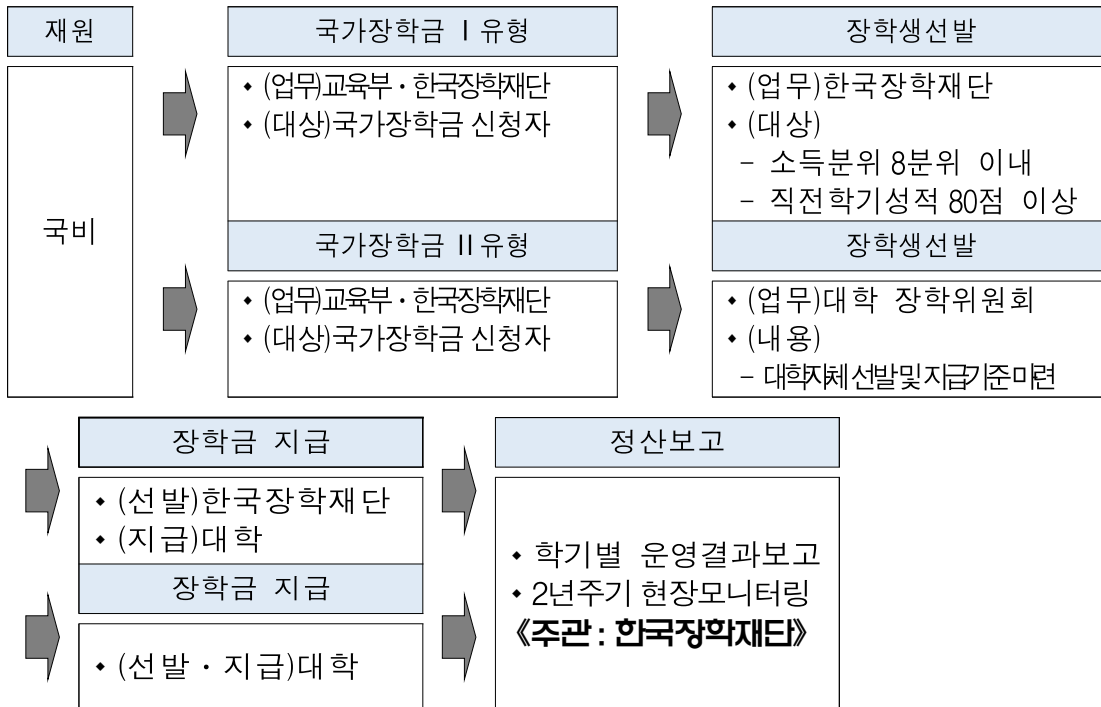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조 성 액 | | 집행액 | 집행잔액 | 집행잔액 처리계획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2015년 | 2016.10월 | | | |
| 합 계 | 2,424,287,728 | 1,702,503,823 | 1,508,347,823 | 194,156,000 | |
| 순 수 조 성 액 | 339,227,760 | 181,811,500 | 157,599,957 | 24,211,543 | 소진 |
| 국가장학금1유형 | 899,422,011 | 783,458,378 | 783,111,461 | 346,917 | 대학회계 반납 |
| 국가장학금2유형 | 1,156,894,843 | 708,380,805 | 544,479,208 | 163,901,597 | 장학재단 반납 |
| 희망사다리장학금 | 2,956,876 | 4,956,886 | 4,956,876 | 10 | 대학회계 반납 |
| 사랑드림장학금 | 2,400,490 | 1,200,513 | 1,200,490 | 23 | 대학회계 반납 |
| 나눔지기장학금 | 23,385,748 | 22,695,741 | 16,999,831 | 5,695,910 | 소진 |

<참고자료2> 향후 장학금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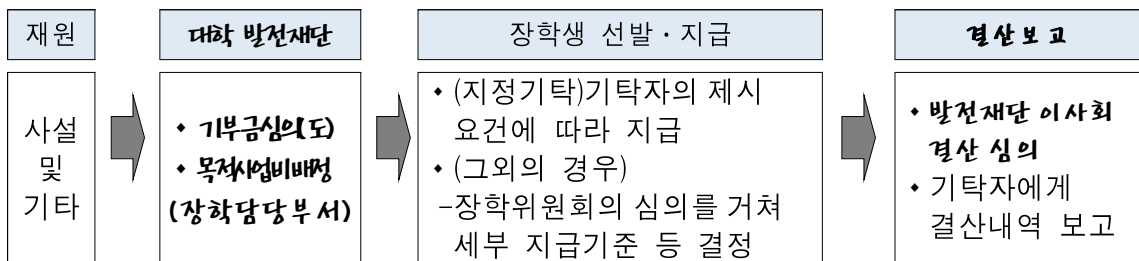
□ 교내장학금 지급



□ 국가장학금 지급



□ 기타 교외장학금 지급

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 장학기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제4장 장학기금</u> | <u><삭 제></u> |
| <p><u>제20조(기금설치)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,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의거 장학기금 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| <u><삭 제></u> |
| <p><u>제21조(기금구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대학의 입학금 및 등록금 징수액의 10%내외</u> <u>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</u> <u>3. 외부장학재단,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</u> | <u><삭 제></u> |
| <p><u>제22조(기금의 용도)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우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.</u></p> | <u><삭 제></u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제2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대학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기금관리운용을 위하여 “장학기금”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의 효율적인 기금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총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학생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학생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,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| <p><u>제24조(장학금 지급) 장학금의 지급 범위, 대상자선정, 지급방법,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제25조(보고)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| <p><u>제26조(준용규정) 장학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</p> | <p><u><삭 제></u></p> |

관계법령

| 개정조문 | 관계법령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| 제25조(회계 간 전입·전출) ①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·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·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<u>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.</u> (이하생략) |
| 제20조 부터 제26조 까지 |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| 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<u>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</u> 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|